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7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 조은희 • 이성권 • 서일준

김기현 • 박성훈 • 김용태

주호영 · 윤상현 · 조배숙

박정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규모 인파사고,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,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.

또한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,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·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

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,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할 필요도 있겠음(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4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설치·운영

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4조의5(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(이하 "통합관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(AI)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학습·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다.
 - ③ 통합관제센터는 재난 및 각종 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공유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, 관제시스템 도입

- •개선 등을 위하여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설치
- •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5조의4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제25조의4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---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 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여야 하다. 1. ~ 7의2. (생략)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7의3.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 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설 치 • 운영 8. (생략)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74조의5(영상정보처리기기 통 <신 설> 합관제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의 예방 · 대비 · 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

관제센터(이하 "통합관제센터"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(AI)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・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다.
- ③ 통합관제센터는 재난 및 각 종 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영상 정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 난안전상황실과 공유하여야 한 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연계, 관제시스 템 도입·개선 등을 위하여 재 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